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부문 규제 재검토 경과와 의미

유 학 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yoo7@keei.re.kr)

1. 서론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인의 고용과 미국 경제의 성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어떤 분야가 되었든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해왔다.

에너지 부문으로 화두를 옮겨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미국 내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다 활발히 개발하고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고용 증진과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부처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의 하나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단행하였다. 석유·가스 개발과 같은 에너지자원 산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수요 증가, 유가 상승과 같이 시장요인이 개선되거나 혁신적인 개발기술의 등장으로

개발비용이 감소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방된 시장에서 단기간에 연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부문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책조치들은 미국의 에너지산업이나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나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3월 28일에 단행한 ‘에너지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모든 부처 장관과 연방청장들에게 각 기관이 소관하는 모든 규제, 정책 조치, 명령, 지침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에너지산업이나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유예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철회하도록 요구했다.¹⁾ 이에 각 부처는 6개월의 재검토를 거친 후 백악관 대통령실 예산관리국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 재검토 보고서를 2017년 10월 25일을 전후해서 공개하였다. 이렇게 재검토된 규제들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에너지정

1)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2017.3.28,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3/28/presidential-executive-order-promoting-energy-independence-and-economy-1>, 접속일: 2017.11.20)



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수송부문 효율정책(차량연비 강화)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 중에서 에너지·자원 부문과 가장 밀접한 규제를 많이 관할하고 있는 에너지부, 내부무, 연방환경청(EPA)의 규제 재검토 결과와 이와 동시에 진행된 규제완화 조치 및 계획들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이와 더불어 미국의회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하여 연방예산, 세제개혁(Tax reform) 등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제2절에서 다룬 규제 재검토의 의미를 고찰한다.

2. 에너지·환경 관련 부처별 규제 재검토 추진 과정 및 결과

가. 에너지부

2017년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에 따라서,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은 우선 2017년 5월 18일, 에너지부의 규제 재검토 계획을 백악관 대통령실 예산관리국장과, 경제정책담당관, 국내정책국장,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2017년 5월 30일, 에너지부는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공동체,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비정부기구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및 의견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다. 에너지부가 정보요청서를 공개 게재한 것은 각계로부터

기존의 에너지부의 활동이나 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부가 집행해온 특정 규제나 의무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철회 요구와 같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너지부는 2017년 7월 14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총 132개의 의견을 공개 수집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부는 '규제 재검토를 위한 특별작업반'(Task Force)을 꾸리고 이 의견들과 함께 에너지부의 지침, 명령, 매뉴얼, 정책 등이 에너지 생산에 부담을 주는 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특히 연방정부 건물의 화석연료 소비, 건축법, 원자력 수출허가 등에 에너지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였고, 2017년 10월 24일 크게 4개 부문의 규제 재검토 방안을 발표하였다.²⁾ 4개 부문은 천연가스 수출 절차, 국립연구소 운영, 국가환경정책법(NEPA), 에너지부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기준 프로그램(Appliance Standards Program), 탄소의 사회적비용 평가에 관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 수출 승인 절차 신속화

에너지부는 2017년 9월 1일, LNG를 포함한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신흥 LNG 수출시장에 미국산 천연가스를 소량 수출할 경우 수출신청서의 검토와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부는 미국 천연가스법에 의거 천연가스의 수출입을 관할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수출 시, 미에너지부는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공익영향평가를 해야 했다. 그러

2) Department of Energy, 'Final Report on Regulatory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3783', 2017.10.24



나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LNG를 포함한 미국산 천연가스를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승인 신청시, 수출물량이 0.14 bcf/d(일일 1억 4천만 입방피트) 미만이고 에너지부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상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동 수출은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로 인정되고,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은 곧 천연가스법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미에너지부는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건에 대해서는 공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출허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부는 향후 대규모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 승인 절차를 신속화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의 기초기술 집중 및 운영 효율화

에너지부는 에너지, 과학, 핵비확산과 관련된 여러 국립연구소를 운영·관리해왔다. 이들 국립연구소는 미래의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잠재력 있는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에 에너지부는 이들 국립연구소들이 원래의 설립목적인 미래 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이라는 임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혁이 요구되는 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에너지부의 기술개발 부문은 상업단계의 기술보다는 기초연구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여 이 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국가환경정책법(NEPA) 관련된 에너지부 내 인허가 절차 최적화

에너지부는 공개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가환경정책법

관련 승인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외부 규정과 내부적 운영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에너지부의 특별작업반은 국가환경정책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법에 따른 에너지부의 인허가 절차를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내놓았다.

먼저 ① LNG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허가와 수출신청 절차를 개혁할 것, ② 에너지부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익영향 평가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더 많이 인정해도 될 지를 검토할 것, 나아가 이미 다른 연방 부처에 의해 예외사항으로 인정된 프로젝트일 경우 에너지부에서도 이를 바로 예외사항으로 채택가능하게 하고, 예를 들어 연방토지에서의 지열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예외 인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무부 연방토지관리국과 같은 타 부처와 협업을 촉진할 것, ③ 대통령실 환경품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의 규정과 맞지 않는 에너지부의 규정을 정리할 것 등이다.

4) 전기제품 효율기준 수립 절차 합리화

에너지부는 '에너지정책및보전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1975)에 따라서 60종 이상의 전기제품에 대해 최소 에너지 소비기준을 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별도의 에너지효율 시험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해 에너지부는 공개의견 수렴을 한 결과 에너지부가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하거나 개정하는 절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았다. 또한 전기제품의 제조사 및 중소기업들이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최소 매 6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이 규정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기준을 제조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기준을 유지하는 기간을 더 늘려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에너지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에너지부는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효율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정확히 예측되었고 실제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 6년마다 에너지효율 기준을 재수립하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부는 에너지 절감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될 경우, 에너지효율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지 않고 기존의 효율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부 자체의 효율 시험 외에 산업계의 시험결과로 대체하는 등 자발적이고, 비규제적인 시장기반의 효율기준 설정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에너지부의 규제에 직접 반영하여 확정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에너지부는 정확한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비용이나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전제품 효율기준의 준수를 위해 순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반 소비자가 부담할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순비용이 과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 신규 효율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기존의 효율 기준에 대한 소급적인 검토를 우선해야 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 소비자의 선호 및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공중의 의견 수렴 결과 천연가스 제품이나, 상용 보일러, 상업 및 산업용 송풍기, 냉장음료 자동 판매기, 주거용 온수기, 콤프레샤, 가정용 중앙 에어컨 및

히트펌프 등에 대해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5) 탄소의 사회적비용 평가를 위한 방법론(지침) 변경

2017년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명령'은 특정 기후정책 등의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예산관리국의 규제분석 지침인 2004년 지침(OMB Circular A-4)만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에너지부도 동 지침만을 준거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이 사회에 끼치는 비용 또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정 할인율, 탄소의 국내 및 국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건전한 규제정책의 마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환경청은 과거 청정전력계획을 마련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방법론으로 동 'OMB Circular A-4'지침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론도 병행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오바마행정부에서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6) 연방 청사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원자력 수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유연한 검토

에너지부는 위에 열거한 몇 가지 규제완화를 위한 제안사항 외에도 미국 내 에너지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연방기관 청사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한 규제나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원자력 수출 승인이나 에너지부의 원자력 피해 비용할당 규정 등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내무부

내무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부담을 주는 내무부의 규제나 활동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2017년 10월 25일 제출하였다.³⁾ 내무부는 연방소유의 토지와 해상에서 생산되는 미국의 석유, 가스, 석탄, 수력 및 재생에너지 자원을 감독한다. 내무부 관할 영토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자원은 미국 전체 에너지의 1/5을 차지한다. 라이언 징케(Ryan Zinke) 내무부 장관은 또한 같은 날 인허가 신속화를 위한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장관령(Secretarial Order 3358)에 서명하였다.

라이언 징케 장관은 본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내무부 내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비용 규제들로 인해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 제약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토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관리되어야 하고 이에 는 에너지·자원도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에 따라 개발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내무부는 인허가를 신속

화하고,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 도입되었던 고용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들을 수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모두에 밝히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에너지의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를 이루기 위해 내무부가 과감하게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규제가 불필요하게 에너지 생산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를 적절히 폐지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재검토 결과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외변 대륙붕 개발을 위한 미국최우선 해상에너지 전략 추진

내무부의 규제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변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OCS⁴⁾)의 94%가 개발을 위해 임대(리스)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지배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미래의 정부 세수도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내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미국최우선 해상에너지전략을 수립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2017년 5월 1일, 내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최우선 해상에너지전략’(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을 이행하기 위한 장관령(Secretarial Order 3350)으로 채택하여 외변대륙붕을 책임성 있게 개발하

3) 미내무부 보도자료, 'Department of the Interior Releases Energy Burdens Report', 2017.10.25, (<https://www.doi.gov/pressreleases/department-interior-releases-energy-burdens-report>, 접속일: 2017.11.15)

4) 외변대륙붕은 미국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대륙붕에 관한 용어로, 미국 내 개별 주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미국 대륙붕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미국 대륙붕의 일부인.



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5개년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⁵⁾

2) 공공토지 석탄 임대 중단 조치의 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약 40%는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토지에서 생산된다. 내무부는 2016년 오바마 정부에서 단행된 공공토지 내 석탄개발을 위한 신규 임대(광구 리스) 중단조치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고용을 위축시키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을 축소시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했다. 이에 내무부는 2017년 3월 29일 장관령 3348(Secretarial Order 3348)을 통해 연방토지 내 석탄 신규 임대 중단 조치를 폐지했다.

3) 연방토지 및 원주민 부족 토지에서의 수입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 추진

2015년 3월, 내무부 토지관리국(BLM)은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토지와 원주민 부족토지에서 수입파쇄법 시행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성분 공개 의무화 등 수입파쇄법과 관련한 규제를 확정 발표했다.⁶⁾ 그러나 동 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라고 현 내무부는 판단하였다. 이에 내무부는 2017년 3월 29일 ‘미국 에너지 독립’에 관한 장관령

(Secretarial Order 3349)를 채택하여 상기 수입파쇄법 관련 규제의 재검토에 착수하였고⁷⁾, 토지관리국은 2017년 7월 25일, 동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규제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⁸⁾

4) 연방토지 및 원주민 부족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부문 메탄 규제의 일시 중단 및 연기 조치

2016년 11월 18일, 내무부 토지관리국은 연방 토지 및 원주민 부족 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 시에 소각 및 환기로 인해 누출되는 메탄가스의 양을 제한하는 규제(Waste Prevention, Production Subject to Royalties, and Resource Conservation AKA the Venting and Flaring rule)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⁹⁾ 이 중 일부 조항은 2017년 1월 17일 이후 발효 및 시행되었으나, 나머지 조항들은 2018년 1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내무부는 동 규제를 재검토하였고, 특히 2018년 1월 17일에 발효될 조항들이 요구하는 요건들이 특히 뉴멕시코주와 같이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주에서 한계유정에서의 생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내무부는 2017년 10월 5일, 아직 미발효된 조항의 일부 요건들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동 규제를 수정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5) 미내무부 보도자료, ‘Secretary Zinke Signs Orders Implementing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2017.5. 1, (<https://www.doi.gov/pressreleases/secretary-zinke-signs-orders-implementing-america-first-offshore-energy-strategy>, 접속일: 2017.11.12)

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9호’, p.7, 2016.8.5

7)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Washington Order NO. 3349, (https://www.doi.gov/sites/doi.gov/files/uploads/so_3349_-_american_energy_independence.pdf, 접속일: 2017.11.20)

8)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BLM-2017-0001-0001>

9) 내무부 토지관리국 웹사이트(<https://www.blm.gov/programs/energy-and-minerals/oil-and-gas/operations-and-production/methane-and-waste-prevention-rule>, 접속일: 2017.11.17)



5) 국가환경보호법(NEPA)에 따른 절차 및 영향평가의 간소화

내무부는 국가환경보호법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허가 과정이 에너지 프로젝트를 완공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에너지 산업에 불확실성을 높이며, 나아가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았다. 특히 에너지 프로젝트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내무부가 요구하는 자원관리계획, 인허가 절차 등이 특히 그러하며, 파이프라인이나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건설구간 사용권한 승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내무부는 임대 기본계획, 석유가스 임대 복구 청원 규정, 자원관리계획과 같은 절차를 수정하거나 철회했다. 또한 내무부는 2017년 8월, 차관명의 메모를 발표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1년을 한도로 하고 복잡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서의 분량을 1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6)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보전 정책 재검토

내무부는 에너지사업들의 환경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내무부의 현행 정책들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야기하며 불필요하게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내무부의 환경보전계획이 법에 명시된 부처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내무부 자체적으로도 환경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내무부는 2017년 3월 29일, '미국 에너지 독립'에 관한 장관령(Secretarial Order 3349)을 통해서 환경보전전략과 고용창출 간의 보다 나은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환경보전정책과 업계의 관행을 재검토하였다.

향후에도 내무부 토지관리국은 에너지 및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경감을 위한 다양한 핸드북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7) 석유가스 개발 부지 리스 프로그램과 인허가 지연 개선

내무부는 특정 부지가 임대 대상 지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리스권이 판매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며, 또한 판매된 이후에도 실제로 임대권이 부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 자원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주정부가 리스판매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임대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연 때문에 자원개발 업계는 탐사 및 생산 전략을 적기에 시행할 수 없고,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내무부는 '연방 육상 석유가스 리스 프로그램 및 경석광물 리스 프로그램 지원과 개선을 위한 장관령'(Secretarial Order 3354)을 통해서 리스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내무부는 2017년 1월 당시, 인허가 담당부서에 92개의 공석이 있었던 것을 절반 가까이 충원했으며, 국토관리국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팀을 확충하고 인허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추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Permit to Drill)의 처리시간을 46일 단축할 수 있었다.

8) 멸종위기종 보호법 관련 규제 재검토

내무부는 한편 '멸종위기종보호법(ESA)'이 육상이나 해상의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모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안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나 송전망 건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보았



다. 동법의 남용으로 인해 프로젝트 비용 및 지연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내무부는 서부지역 주지사연합 및 기타 지역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멸종위기종 보호법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멸종위기종보호법 규정과 관련 정책 문서에 대해서 낱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부처의 장관령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다. 연방환경청(EPA)

연방환경청(EPA)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과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과 같은 환경법규에 근거하여 미국 내 에너지의 사용 및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들을 공표해왔다. 2017년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스캇 프루잇(Scott Pruitt) 연방환경청장은 즉시 규제개혁특별작업반(Regulatory Reform Task Force)을 설치하고 관할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 하였다.

먼저 연방환경청 규제개혁특별작업반은 2017년 4월 11일,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 수렴하였는데, 46만개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개회의 등을 통해서 연방환경보호청은 2017년 10월 25일 발표한 규제 재검토 결과보고서¹⁰⁾에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사용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신규 배출원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 둘째 국가환경대기질기준(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제도의 개혁, 셋째 연방환경청 관할 규제의 고용영향에 대한 재평가, 넷째 부문별 외부홍보 프로그램의 전개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4가지의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추가적으로 청정전력계획이나 차량연비규제와 같이 연방환경청의 에너지부문 핵심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와 조치사항을 연속해서 서술하였다.

1) 신규 배출원 사전검사 제도 포괄적 재검토

청정대기법에 따라서 연방환경청은 주로 오염물질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신규배출원검사(NSR; New Source Review)는 신규 건설되거나 개보수된 배출원이 대기 질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설 이전단계의 인허가 제도이다. 신규배출원검사의 승인은 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가 준수해야하는 배출원 부지 별 의무사항을 확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건설 승인, 배출한도, 배출원 운영방법 등이 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배출원 검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프로젝트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해당 신규배출원인 에너지 탐사나 생산, 수송시설의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 심지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이나 기존 설비의 개보수를 회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처럼 연방환경보호청에 접수된 많은 공개의견들이 이 신규배출원 사전검사 및 허가

1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inal Report on Review of Agency Actions that Potentially Burden the Safe, Efficient Development of Domestic Energy Resources Under Executive Order 13783," 2017.10.25



과정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고 지적하였고 마찬가지로 동 제도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두려워 설비의 현대화를 주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연방환경청은 신규배출원 사전검사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상쇄배출권 구조를 재검토하고 연방환경청과 각 주들과의 관계도 개선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신규배출원 인허가제도의 개혁을 위한 특별작업반(NSF Reform Task Force)을 구성할 계획이다.

2) 국가환경대기질기준 프로그램 재검토 및 주정부 이행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연방환경보호청은 청정대기법에 의거하여 6대 대기오염물질(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가환경대기질기준(NAAQS)을 설정하며, 매 5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각 주와 원주민 부족지역별로 특정 오염원에 대해서 해당 지역이 NAAQS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연방환경보호청은 확인한다. 주정부는 이 대기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 달성 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관리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연방환경청은 이러한 대기질 기준의 준수 의무는 오염물질이나 그 전구체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요시설들도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들이 대기질기준 달성 지역에 입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라도 그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에

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운영자의 비용상승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만약에 이러한 설비가 대기질 기준미달로 폐쇄된다면 고용과 해당 설비 운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환경청에 접수된 공개의견들도 이 대기질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개정 주기가 짧다는 우려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개정주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 지침, 기술지원 문서를 갖추어야 하고, 준수요건이 중복되기도 하며, 주정부가 기존 대기질기준에 맞춰 이행계획을 충분히 이행하기도 전에 새로운 대기질기준이 수립되는 등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이행계획 승인의 지연문제나 오존농도 기준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접수되었다. 이런 이유로 연방환경보호청은 신규 에너지 설비의 건설, 기존설비의 용량확대나 현대화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이에 연방환경청은 오존농도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오존기준 준수를 위한 협력 작업반을 구성하고, 규제 완화 및 오존 기준 개선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주정부 대기질 기준 준수 이행계획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3) 환경관련법 관련 규제 준수 비용 및 고용영향 지속 재평가

연방환경보호청은 규제가 기업, 노동자 및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유발하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연방 규정 및 기관 규제 준수 및 비용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04년 이후 10년 간 연방환경청의 규제에 따른 총 연간 비용이 376억~4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비용이 프로젝트 개발이나 확장뿐만



아니라 자본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방환경보호청은 환경관련법의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또는 고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4) 아웃리치 활동 강화

연방환경청은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규제에 대한 조율을 하여 규제 수립 절차의 복잡성이나 갈등을 줄이고 규제 부담은 줄이되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계나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 이를 위해 연방환경청은 산업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프로그램으로 석유가스, 유틸리티, 광업, 발전 및 자동차 산업과 직접 연관된 13개 부문을 정하고 동 산업부문에 대한 홍보, 협력을 위한 스마트 섹터(Smart Sectors)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섹터 프로그램은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고 산업 무역협회, 기업, 연방환경청 지역사무소,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관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5) 청정전력계획, 메탄배출규제, 연비기준 등 오바마 행정부 핵심 규제의 재검토 추진 경과

가) 기존 화력발전기에 대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 추진

2015년 10월에 최종 확정되었던 기존 화력발전기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인 청정전력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발전부문 온실가스 규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제기되었고, 2016년 2월 연방 대법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정전력계획의 시행 중지를 결정했다.

2017년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명령'이 단행되자, 연방환경청장은 같은 날 즉각 청정전력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고시에 서명했고, 법무부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2017년 4월 28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동 소송을 60일간 유예할 것을 명령했다. 다시 2017년 5월 15일에 법무부는 연방환경보호청이 청정전력계획을 재검토하는 동안 소송을 계속 유예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보충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2017년 8월 8일, 법원은 추가로 60일간 유예를 연장했다.

2017년 10월 10일, 연방환경보호청은 청정전력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규제개정안에 서명했다.¹¹⁾ 동 청정전력계획 폐지안은 2017년 12월 15일까지의 공개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나) 신규 화력발전기에 대한 탄소배출기준(Carbon Pollution Standard) 재검토

동 규제는 청정전력계획과 마찬가지로 화력발전기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이지만, 신규 건설되거나 개보수된 화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 탄소배출기준

11) 미연방환경보호청 보도자료, "EPA Takes Another Step to Advance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Strategy, Proposes Repeal of Clean Power Plan," 2017.10.10



(CPS)에 대해서도 2017년 3월 28일 연방환경보호청장의 고시에 따라 재검토가 추진되었다. 현재 동 규제 역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반대 소송에 계류 중으로 법무부는 같은 날 법원에 소송의 유예를 요구했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소송의 중단을 인용한 상태다.

다) 석유가스 부문 메탄 규제 재검토 및 시행 중단 추진

연방환경보호청은 2016년 6월, '석유가스 부문 신규 건설 또는 개보수된 배출원'에 대한 탈루성 메탄의 배출 규제를 확정했다. 동 규제는 석유가스 부문의 배출원에 대해서 최초로 온실가스(메탄)와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동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소송이 즉각 제기되었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메탄 규제에 대해서도 연방환경청장은 2017년 3월 28일, 이를 재검토하기 위한 고시에 서명했고, 법무부는 2017년 4월 7일 법원에 소송 유예를 요구하여 2017년 5월 18일 법원에서는 연방환경보호청이 동 메탄 규제를 재검토하는 기간 동안 소송 진행 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연방환경보호청장은 2017년 4월 18일, 상기 탈루성 메탄 배출 준수 기준과 관련하여 생산량이 작은 소형 유정의 탈루성 메탄 배출량 기준 적용 여부, 메탄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체수단의 사용 허가 절차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서한에 서명했다. 또한, 2017년 5월 26일에는 폐쇄형 환기시스템 인증 요건, 유정 고압 펌프 표준 재검토 및 재검토 기간 동안 동 규제의 부분적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2017년 6월 12일, 연방환경보호청장은 3개월 간 규제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서명했고 2년간의 시행중단을 제안하는 별도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라) 2022~2025년식 경량 차량에 대한 연비 규제 적절성 여부 재검토

2012년에 연방환경보호청은 교통부의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과 함께 2017년식 이후 경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평균연비(CAFE) 기준을 설정했다. 동 규제에는 연비 기준의 적절성을 2018년 4월 1일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환경보호청은 2017년 1월 12일, 2022~2025년식 경량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절하다는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2017년 3월 22일 연방환경청장과 교통부 장관은 추가 협의와 조정을 허용하고, 중간평가가 최상의 가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21일에 연방환경보호청과 교통부는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의견,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요청서를 게재하였다.

연방환경보호청은 규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2018년 4월 1일까지 2022~2025년식 경량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적절성에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마) 청정수자원 규제(Clear Water Rule) 재검토

2015년 연방환경보호청은 청정수자원법(Clear Water Act)에 의거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수자원의 범주를 확대하는 청정수자원규제를 확정하였다. 동 규제의 도입으로 상류지류, 습지 등이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대상 수자원에 추가로 포함됨으로써 세일자



원이나 석탄개발 등에 규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발표했던 미국 최우선에너지 계획에서 이를 폐지 대상 규제로 직접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에 연방환경청은 이를 재검토하였고, 2017년 6월 27일에 연방환경청과 미육군은 동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규제개정안에 서명했다.

3.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부문 규제 재검토 및 완화의 영향

미국 에너지부, 내무부, 연방환경보호청은 에너지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직접 도입하고 집행하는 부처로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 전면적인 규제 재검토 결과는 결국 석유·가스·석탄 자원의 개발을 제약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산 에너지 자원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생산, 발전기나 수송용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제는 주로 연방환경보호청의 관할 규제가 많고 이 역시 관련 배출기준을 재검토 하거나 배출규제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특정해서 재검토 또는 폐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화력발전기에 대한 배출규제인 청정전력계획은 폐지 절차에 착수했고, 석유가스부문 메탄규제는 재검토 및 시행 중단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정수자원규제나 신규 화력발전기

에 대한 배출규제, 수송부문 연비규제 등도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재무부에서는 2017년 10월, 부처 내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2010)의 자원채굴과 관련된 여러 조항의 폐지를 건의했고, 이 보다 앞서 이미 2017년 미 하원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고 핵심조항을 폐지하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¹²⁾ 또한, 백악관 대통령실의 예산관리국(OMB)는 재검토 중인 경량 차량에 대한 연비규제 외에 중대형 차량에 대한 연비규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다.¹³⁾

한편 미 상원에서는 2018년에서 2027년까지 10년간 10억 달러의 세수를 자원부문에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2017년 10월 19일 통과시킴으로써 석유가스 시추·개발의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곧이어 2017년 11월 15일에는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서 알래스카 북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내 일부 지역¹⁴⁾에서 석유 시추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알래스카 국토보호법(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n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ANWR 지역 내에서 석유가스 개발 부지의 임대를 통해서 연방정부와 알래스카 주정부가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1년 간 에너지부문에서 많은 정책변화가 일어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

1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6호,” pp.49~50, 2017.10.23

1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7호,” pp.34~35, 2017.10.30

14) ANWR 내 1002 구역(1002 Area)으로 면적은 150만 에이커로, ANWR 전체 면적은 1900만 에이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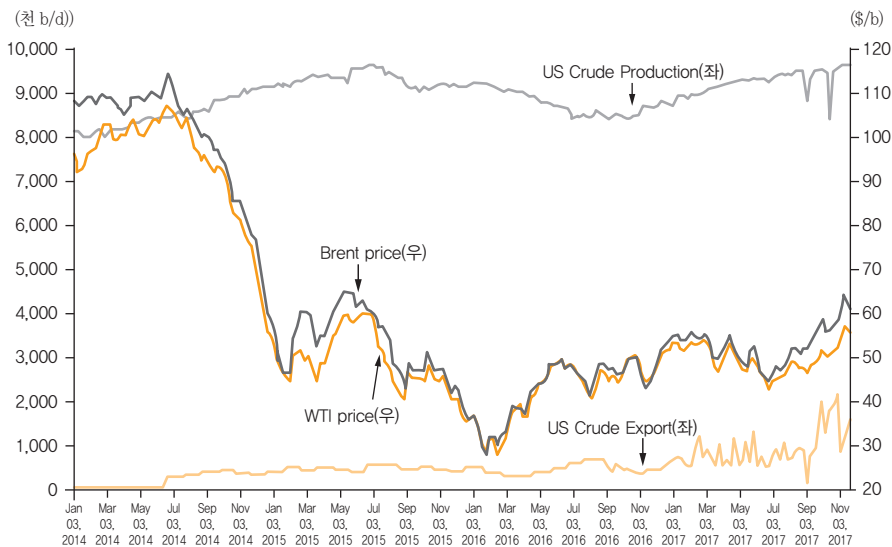


공약했던 많은 내용들이 실천에 옮겨졌다. 에너지부문 규제 완화가 바로 그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상 에너지 자원개발 부분의 규제는 에너지자원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긴 하나, 국제유가와 같이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지연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줄이고, 북극권이나 대륙붕 등 이전에는 개발이 제한되었던 부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화석에너지를 사용

한 화력발전기에 대한 가장 큰 규제로 여겨졌던 청정전력계획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고, 자동차 연비규제가 재검토 되는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위기에 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여지도 존재한다.¹⁵⁾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나 완화조치는 이제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거나 사실상 윤곽이 드러났다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부터 강조되었고 상당부분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방부처내의 규제뿐만이 아니

[그림 1] 미국산 원유의 생산량과 수출량, 국제유가 추이



자료: 미에너지정보청 웹사이트(www.eia.gov)

15) 한편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방안이 미 하원의 조세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 Bill, 2017. 11. 2 발의, 2017. 11. 16 하원통과)에 포함되어 미국 국내의 신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가 컸으나, 이후 상원의 조세개혁법안(2017. 12. 2 상원통과)이나 공화당 상하원이 협의한 최종 수정법안(2017. 12. 15일 발표)에서는 동 축소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의 대폭 축소는 당분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의회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0월에 통과된 ‘2018년 예산결의안’은 2018년만이 아닌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 간의 연방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에너지자원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있다. 이와 연계해서 이루어진 알래스카 ‘북극권야생보호구역’의 개발 제한 해지법안 통과가 바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적 입장이 같은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에서 법제도적인 변화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미국의 에너지정책의 국내적 조치는 상당히 마무리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에너지의 수출을 강조하는 외교·통상정책도 분명히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이 국내적 정책조치의 추진과 함께 세계 에너지시장의 여건도 미국의 에너지자원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감산 공조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불안정, 이란과의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진 데다,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 등 수요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산 원유 생산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원유와 브렌트유 등 다른 유종과의 가격차이도 벌어지면서 미국산 원유의 수출도 2017년에 증가하였다. 국제유가가 다소 상승하는 것은 미국산 LNG의 국제 경쟁력에도 긍정적이다. 유가에 연동되어 가격이 정해지는 중동산 LNG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미국 내 가스가격에 연동된 미국산 LNG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의 에너지정책의 국내조치들이 윤곽을 거의 다 드러내었고 실제로 상당히 추진된 만큼, 이제는 세계 에너지시장 여건과

미국산에너지의 수출경쟁력 등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시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6-29호,” 2016.8.5
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7-36호,” 2017.10.23
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7-37호,” 2017.10.30

〈외국 문헌〉

- Department of Energy, “Final Report on Regulatory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3783,” 2017.10.24
Department of Interior, “Department of the Interior Releases Energy Burdens Report,” 2017.10.25
Department of Interior, “Secretary Zinke Signs Orders Implementing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2017.5.1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inal Report on Review of Agency Actions that Potentially Burden the Safe, Efficient Development of Domestic Energy Resources Under Executive Order 13783,” 2017.10.25
_____, “Final Report on Review of Agency Actions that Potentially



Burden the Safe, Efficient Development
of Domestic Energy Resources Under
Executive Order 13783,” 2017.10.25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Tax Cuts and Jobs Act
H.R. 1 – Section-by-Section Summary,”
2017.11.2

〈웹사이트〉

미내무부 국토관리국 웹사이트, <http://www.blm.gov>

미에너지정보청 웹사이트, <http://www.eia.gov>

미연방환경청 웹사이트, <https://www.epa.gov>

미에너지부 웹사이트, <http://www.doe.gov>

미내부무 웹사이트, <http://www.doi.gov>

백악관 웹사이트, <https://www.whitehouse.gov>